

[별첨2]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자료 해설

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자료 해설

- ◇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파일 관련 안내입니다.
- ◇ 첨부파일은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불필요한 경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.

□ 첨부1-1. 사업자등록증(필수 제출)

□ 첨부1-2. 중소기업·중견기업 증명서(필수 제출)

- 다음 중 해당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
 - (중소기업) 중소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
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(<http://sminfo.smba.go.kr/>)
 - (중견기업) 중견기업 확인서
: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및 발급(<https://www.hpe.or.kr/PGUM0001.do>)
- 제출 시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제출

□ 첨부1-3. 대상제품 관련 자료(필수 제출)

- 협의체의 분석제품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제품 관련 자료 제출
-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(경쟁관계·납품관계 판단 기준이 됨)
 - 지원기업이 영위하는 대상제품 관련 브로셔 및 기타 사진자료
 - 대상제품명이 기재된 납품·공급계약서
 - 시제품만 존재하는 경우 도면, 설계서 또는 특허출원 서류

□ 첨부1-4. 지식재산 보유현황 확인서(필수 제출)

- 관련 양식자료 활용하여 작성 제출
- 국내외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권에 대해 첨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기업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

□ 첨부1-5. 분쟁유형별 증명서류(반드시 제출)

-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공동대응 필요성 증빙 서류 사본 제출
 - 협의체내 참여기업이 수령한 경고장, 라이선스 계약서 또는 소장 등 (기업비밀 삭제)
 - 대상제품 관련 수출국가 공통 증명서류(해외 납품·공급계약서, 발주서 등)
 - 기타 대상제품 관련 제3자 분쟁 증거자료

□ 첨부1-6. 수출국가확인서(해당시 제출)

- 다음 중 하나의 기관에서 '수출국가명'이 표시되도록 발급(최대5개국)
 - 한국무역협회: <http://webdocu.kita.net/> (무역협회 회원사만 가능)
 - 한국관세무역개발원: <http://trass.kctdi.or.kr>
- 최근 5년(12년~16년) 중 해당 실적 년도 제출
 - 신청기업의 수출국가수에 따라 분쟁위험 노출도 평가점수가 산정됨
 - 국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1개국 수출로 산정